

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8. 4.>

임시번호표(제6조제2항 및 제31조의4제4항 관련)

1.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

(단위: mm)



- 가. 번호표 크기: 가로 520mm×세로 110mm
- 나. 재질: 목판
- 다. 색칠: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
- 라. 번호: 발행월별 일련번호(예: 7월의 1호 → 07-0001)
- 마. 상호: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(예: ○○건설기계)
- 바. 전화번호: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전화번호(예: 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)
- 사. 임시운행기간: 15일 이내(시험·연구용은 3년 이내)

2. 등록된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

(단위: mm)



- 가. 번호표 크기: 가로 520mm×세로 110mm
- 나. 재질: 목판
- 다. 색칠: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
- 라. 번호: 현재의 등록번호(예: 012가4586)
- 마. 상호: 정비소 또는 검사소 명칭(예: ○○건설기계정비공장)
- 바. 전화번호: 정비소 또는 검사소의 전화번호(예: 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)